

일반 :

# 이사회 관련 상법 주요 내용



삼일 PwC 거버넌스센터

\*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상법을 기준으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삼일 PwC 거버넌스센터가 선택적으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의 법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4장 주식회사>제 3절 회사의 기관>제 2관 이사와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도 함께 적용 받는다.

## Overview

구성 등	이사 선임, 해임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이사회 구성	법 제382조, 제385조, 제542조의5 법 제382조, 제542조의8 법 제382조의2, 제542조의7 법 제383조, 제542조의8
권한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결의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업무 보고 요구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법 제390조 법 제391조, 제393조 법 제393조 법 제393조 법 제393조의2
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회 의사록 작성 정관 등 비치, 공시의무	법 제382조 법 제382조의3 법 제382조의4 법 제397조 법 제397조의2 법 제393조 법 제391조의3 법 제396조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법 제399조, 제400조 법 제401조 법 제403조 법 제406조의2
기타	이사의 보수 대표이사 집행임원제도	법 제388조 법 제389조 법 제408조의2~9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 4. 이사 · 감사 ·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 제382조의2(집중투표)

-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 ③ 제 1 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 1 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⑥ 제 2 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3조(원수, 임기)

- ① **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1 명 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②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 ③ 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후략>

### 제385조(해임)

-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 434 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3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 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186 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86조(결원의 경우)

-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389조(대표이사)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 208 조제 2 항, 제 209 조, 제 210 조와 제 386 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3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11. 4. 14.>
- ③ 제 368 조제 3 항 및 제 371 조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제391조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1조3(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31.>
-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 제392조(이사회의 연기 · 속행)

제 372 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3조(이사회의 권리)

-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 ④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⑤ 제 386 조제 1 항 · 제 390 조 · 제 391 조 · 제 391 조의 3 및 제 392 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 403 조제 1 항 또는 제 406 조의 2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 ② 제 41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9. 12. 31.>
-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 1 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 제397조(경업금지)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이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 ③ 제 2 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② 제 1 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 3 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제 4 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①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01 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제 399 조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01조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 399 조, 제 401 조, 제 403 조 및 제 406 조의 2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②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 1 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

###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② 제 1 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 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 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⑤ 제 3 항과 제 4 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 ⑥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 3 항과 제 4 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 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 ⑦ 제 176 조제 3 항, 제 4 항과 제 186 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① 회사는 전조제 3 항과 제 4 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전조제 3 항과 제 4 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① 제 403 조제 3 항과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 12. 12, 2001. 7. 24.>
- ② 제 403 조제 3 항과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① 제 403 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 176 조제 3 항 · 제 4 항, 제 403 조제 2 항, 같은 조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 및 제 404 조부터 제 40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 1 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 2 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 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 · 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 ·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 · 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 382 조의 3, 제 382 조의 4, 제 396 조,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제 398 조, 제 400 조, 제 401 조의 2, 제 402 조부터 제 406 조까지, 제 406 조의 2, 제 407 조, 제 408 조, 제 412 조 및 제 412 조의 2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 363 조제 1 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상장회사가 이사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2조의5(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 542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 382 조의 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 542 조의 8 제 5 항에서 같다)의 6 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382 조의 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 2 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 3 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 382 조제 3 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 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 34 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0. 1. 29.>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 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 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 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 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 ·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33 조제 3 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 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 ③ 제 1 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 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 393 조의 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⑤ 제 1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 363 조의 2 제 1 항, 제 542 조의 6 제 1 항 ·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 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